

##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입주자 모집공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www.lottycastle.co.kr>)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는 분양 상담전화(☎1811-6700)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3.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으로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분양가상한제 주택(제1항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 10년간 (신설, '2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7호)                     | 7년간 (신설, '20.4.17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토지임대주택(제1항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 가목)  | 5년간                              |

|                                                                           |        |       |    |
|---------------------------------------------------------------------------|--------|-------|----|
| -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 당첨자(제3조제2항 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 및 청약신청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제23조 2항 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당첨·계약 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 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하여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충족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방식,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565호, 제3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적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미 발생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① 분양권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②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에는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됩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위 공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정하는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 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급하는 것은 주택법령 위반에 해당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③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인천시(일부)·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일부)·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 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전지역. 경기도 전지역(제외지역 : 김포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모현면·백암면·양지면·원삼면(가재울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시(일죽면·죽산면(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능리·장원리·두현리)), 삼죽면(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 인천광역시 전지역(제외지역 : 강화군·옹진군), 세종시(행복도시지역만 지정), 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오창읍·오송읍만 지정)
-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경기도(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지정)), 인천광역시(연수구·남동구·서구), 대구광역시(수성구), 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

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존)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본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1순위, 2순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2020년 4월 17일 개정)

##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하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해당)<br>(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                                                                                         | 일반 1순위(기타)<br>(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br>경기도·인천시 거주) | 일반 2순위<br>(서울특별시, 경기도·<br>인천시 거주)                                                                                     |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기간<br>(특공/일반 당첨자)                                                                                                                                    | 계약체결                                    |
|-----|-----------------------------------------------------------------------------------------------------------------------------------------------|-----------------------------------------------------------------------------------------------------------------------|-----------------------------------------------|-----------------------------------------------------------------------------------------------------------------------|--------------------------------|----------------------------------------------------------------------------------------------------------------------------------------------------------|-----------------------------------------|
| 일 정 | 20년 7월 14일(화요일)                                                                                                                               | 20년 7월 15일(수요일)                                                                                                       | 20년 7월 16일(목요일)                               | 20년 7월 17일(금요일)                                                                                                       | 20년 7월 23일(목요일)                | 20년 7월 25일(토요일)<br>~8월 3일(월요일)                                                                                                                           | 20년 8월 4일(화요일)<br>~8월 7일(금요일)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후<br>조회 가능) | 각 청약유형별<br>자격검증 필요서류<br>(10:00 ~ 16:00)                                                                                                                  | 계약서류 지참하여<br>건본주택 방문<br>(10:00 ~ 16: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li>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br/>(www.applyhome.co.kr)</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br/>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건본주택<br/>(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26 길음역<br/>롯데캐슬 트윈골드 건본주택)</li> </ul> <p>※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br/>공지 예정</p>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도 이용 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7925(2020.06.2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5층, 지상 35층 2개동, 총 395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2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93세대, 임대주택 83세대, 보류지 1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024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 구<br>분           | 주택<br>관리번호 | 모<br>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br>표기 | 세대별 계약면적(m²) |         |          |                    |          | 세대별<br>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           |          |           |    |          | 최하층<br>우선<br>배정세대 |
|------------------|------------|--------|-----------------|----------|--------------|---------|----------|--------------------|----------|-------------|---------|------------------|-----------|----------|-----------|----|----------|-------------------|
|                  |            |        |                 |          | 세대별 공급면적(m²) |         |          | 기타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 총공<br>급 | 특별공급             |           |          |           |    | 일반<br>분양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일반<br>(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소계 |          |                   |
| 민<br>영<br>주<br>택 | 2020000807 | 01     | 059.5400A       | 59A      | 59.5400      | 24.5900 | 84.1300  | 51.0000            | 135.1300 | 18.0800     | 38      | 4                | 4         | 8        | 1         | 17 | 21       | 0                 |
|                  |            | 02     | 059.8700B       | 59B      | 59.8700      | 24.1200 | 83.9900  | 51.2800            | 135.2700 | 18.0500     | 104     | 10               | 10        | 21       | 3         | 44 | 60       | 2                 |
|                  |            | 03     | 059.3600C       | 59C      | 59.3600      | 24.8900 | 84.2500  | 50.8400            | 135.0900 | 18.1100     | 57      | 6                | 6         | 11       | 2         | 25 | 32       | 3                 |
|                  |            | 04     | 084.6900        | 84       | 84.6900      | 33.9300 | 118.6200 | 72.5400            | 191.1600 | 25.5000     | 19      | 2                | 5         | 1        | 1         | 9  | 10       | 0                 |
| 합계               |            |        |                 |          |              |         |          |                    |          |             | 218     | 22               | 25        | 41       | 7         | 95 | 123      | 5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최하층이라 함은 4층을 말하며, 4층이 없는 경우 바로 위층을 최저층 의미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m², 세대)

| 주택형<br>(타입)        | 동<br>(라인)            | 층      | 해 당<br>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합계      | 계약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                      |        |            |         |         |         |          | 2021-01-27 | 2021-07-28 | 2022-01-26 | 2022-08-24 | 2023-03-22 | 2023-10-18 |         |
| 059.5400A<br>(59A) | 101동(3호)             | 5~9층   | 2          | 251,516 | 345,484 | 597,000 | 59,700   | 59,700     | 59,700     | 59,700     | 59,700     | 59,700     | 59,700     | 179,100 |
|                    |                      | 10~19층 | 10         | 254,043 | 348,957 | 603,0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60,300     | 180,900 |
|                    |                      | 20층이상  | 14         | 256,993 | 353,007 | 610,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183,000 |
|                    | 101동(4호)             | 5~9층   | 2          | 252,780 | 347,220 | 60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180,000 |
|                    |                      | 10~19층 | 9          | 255,307 | 350,693 | 606,000 | 60,600   | 60,600     | 60,600     | 60,600     | 60,600     | 60,600     | 60,600     | 181,800 |
|                    |                      | 20층이상  | 1          | 258,256 | 354,744 | 613,0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183,900 |
| 059.8700B<br>(59B) | 101동(2호)<br>102동(2호) | 4층     | 1          | 248,567 | 341,433 | 590,0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59,000     | 177,000 |
|                    |                      | 5~9층   | 7          | 251,094 | 344,906 | 596,000 | 59,600   | 59,600     | 59,600     | 59,600     | 59,600     | 59,600     | 59,600     | 178,800 |
|                    |                      | 10~19층 | 18         | 253,622 | 348,378 | 602,000 | 60,200   | 60,200     | 60,200     | 60,200     | 60,200     | 60,200     | 60,200     | 180,600 |
|                    |                      | 20층이상  | 27         | 256,571 | 352,429 | 609,000 | 60,900   | 60,900     | 60,900     | 60,900     | 60,900     | 60,900     | 60,900     | 182,700 |
|                    | 101동(5호)<br>102동(5호) | 4층     | 1          | 249,830 | 343,170 | 593,000 | 59,300   | 59,300     | 59,300     | 59,300     | 59,300     | 59,300     | 59,300     | 177,900 |
|                    |                      | 5~9층   | 8          | 252,358 | 346,642 | 599,0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59,900     | 179,700 |
|                    |                      | 10~19층 | 20         | 254,886 | 350,114 | 605,000 | 60,500   | 60,500     | 60,500     | 60,500     | 60,500     | 60,500     | 60,500     | 181,500 |
|                    |                      | 20층이상  | 22         | 257,835 | 354,165 | 612,000 | 61,200   | 61,200     | 61,200     | 61,200     | 61,200     | 61,200     | 61,200     | 183,600 |
| 059.3600C<br>(59C) | 101동(1호)<br>102동(1호) | 4층     | 2          | 250,673 | 344,327 | 595,0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59,500     | 178,500 |
|                    |                      | 5~9층   | 10         | 253,201 | 347,799 | 601,000 | 60,100   | 60,100     | 60,100     | 60,100     | 60,100     | 60,100     | 60,100     | 180,300 |
|                    |                      | 10~19층 | 18         | 255,729 | 351,271 | 607,000 | 60,700   | 60,700     | 60,700     | 60,700     | 60,700     | 60,700     | 60,700     | 182,100 |
|                    |                      | 20층이상  | 15         | 258,256 | 354,744 | 613,0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61,300     | 183,900 |
|                    | 102동(6호)             | 4층     | 1          | 251,937 | 346,063 | 598,000 | 59,800   | 59,800     | 59,800     | 59,800     | 59,800     | 59,800     | 59,800     | 179,400 |
|                    |                      | 5~9층   | 5          | 254,465 | 349,535 | 604,000 | 60,400   | 60,400     | 60,400     | 60,400     | 60,400     | 60,400     | 60,400     | 181,200 |
|                    |                      | 10~19층 | 5          | 256,993 | 353,007 | 610,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61,000     | 183,000 |
|                    |                      | 20층이상  | 1          | 259,520 | 356,480 | 616,000 | 61,600   | 61,600     | 61,600     | 61,600     | 61,600     | 61,600     | 61,600     | 184,800 |
| 084.6900<br>(84)   | 102동(3호)             | 5~9층   | 4          | 342,938 | 471,062 | 814,000 | 81,400   | 81,400     | 81,400     | 81,400     | 81,400     | 81,400     | 81,400     | 244,200 |
|                    |                      | 10~15층 | 5          | 346,729 | 476,271 | 823,000 | 82,300   | 82,300     | 82,300     | 82,300     | 82,300     | 82,300     | 82,300     | 246,900 |
|                    |                      | 20층이상  | 1          | 350,100 | 480,900 | 831,000 | 83,100   | 83,100     | 83,100     | 83,100     | 83,100     | 83,100     | 83,100     | 249,300 |
|                    | 102동(4호)             | 5~9층   | 4          | 344,623 | 473,377 | 818,000 | 81,800   | 81,800     | 81,800     | 81,800     | 81,800     | 81,800     | 81,800     | 245,400 |
|                    |                      | 10~15층 | 4          | 348,415 | 478,585 | 827,000 | 82,700   | 82,700     | 82,700     | 82,700     | 82,700     | 82,700     | 82,700     | 248,100 |

|  |  |       |   |         |         |         |        |        |        |        |        |        |        |         |
|--|--|-------|---|---------|---------|---------|--------|--------|--------|--------|--------|--------|--------|---------|
|  |  | 20층이상 | 1 | 352,206 | 483,794 | 836,000 | 83,600 | 83,600 | 83,600 | 83,600 | 83,600 | 83,600 | 83,600 | 250,800 |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품목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신청 일시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br>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7.14 (화요일)<br>(청약Home : 08:00~17:30)<br>(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                                  |           | 59A | 59B | 59C | 84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br>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1   | 2   | 1   | 1  | 5  |
|                  | 장애인                              |           | 1   | 2   | 1   | 0  | 4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2   | 1   | 0  | 4  |
|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 1   | 2   | 1   | 1  | 5  |
|                  | 장기복무 제대 군인                       |           | 0   | 2   | 2   | 0  | 4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50%)             |           | 2   | 5   | 3   | 3  | 13 |
|                  |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인천시, 경기도거주자(50%) |           | 2   | 5   | 3   | 2  | 12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6   | 16  | 8   | 1  | 31 |
|                  |                                  | 일반공급(25%) | 2   | 5   | 3   | 0  | 10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거주자우선공급     |           | 1   | 3   | 2   | 1  | 7  |
| 합계               |                                  |           | 17  | 44  | 25  | 9  | 9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공통사항)

| 구분        |    | 내용                                                                                                                                                                                         |
|-----------|----|--------------------------------------------------------------------------------------------------------------------------------------------------------------------------------------------|
| 세대당 1회 한정 |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 자격제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b>5년</b>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 자격        | 공통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div>무주택<br/>요건</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청약하여 당첨될(예비포함)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li><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주 요건</li><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주택공급신청자</li><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ul></li></ul></div>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           | <div>청약자격<br/>요건</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li>-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li>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자</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ul></li><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li>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ul></li></ul><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div>[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서울특별시</th><th>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00만원</td><td>25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300만원</td><td>4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d>7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r></table></div></div> | 구 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구 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
|-------|------------------------------------------------------------------------------------------------------------------------------------------------------------------------------------------------------------------------------------------------------------------------------------------------------------------------------------------|
| 배정세대수 | • 22세대 ,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 9억이하                                                                                                                                                                                                                                                                   |
| 신청자격  |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p> <p>•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p> |
|       | <div>추천기관</div> <div>청약통장 구비여부</div>                                                                                                                                                                                                                                                                                                     |

|                     |                                                                                                                                                                                                                                                                                                                                                                                                                                                                                                                                                                                                                                                                                                                                                                                                                                                                                                                                                          |
|---------------------|----------------------------------------------------------------------------------------------------------------------------------------------------------------------------------------------------------------------------------------------------------------------------------------------------------------------------------------------------------------------------------------------------------------------------------------------------------------------------------------------------------------------------------------------------------------------------------------------------------------------------------------------------------------------------------------------------------------------------------------------------------------------------------------------------------------------------------------------------------------------------------------------------------------------------------------------------------|
|                     | <div> <div>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자립 지원과 등), 국가유공자(서울지방보훈청 복지와)</div> <div>장기복무 제대군인(서울지방보훈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div> </div> <div>청약통장 필요없음</div> <div>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요건을 갖춘 분</div>                                                                                                                                                                                                                                                                                                                                                                                                                                                                                                                                                                                                                                                                                                                                                         |
| <div>당첨자 선정방법</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함.</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li> <li>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ul> </li> </ul>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
|-------|--------------------------------------------------------------------------------------------------------------------------------------------------------------------------------------------------------------------------------------------------------------------------------------------------------------------------------------------------------------------------------------------------------------------------------------------------------------------------------------------------------------------------------------------------------------------------------------------------------------------------------------------------------------------------------------------------------------------------------------------------------------------------------------------------------------------------------------------------------------------------------------------------------------------------------------------------------------------------------------------------------------------------------------------------------------------------------------------------------------------------------------------------------------------------------------------------------------------|
| 배정세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 이하</li> </ul>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이상,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li> <li>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li> <li>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li> <li>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또한,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 됨.</li> <li>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 2018.05.08」 및 관련 법령에 따름.</li> </ul> </li> <li>「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b>서울특별시 2년 이상</b>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li> </ul> |



|                     |                                                                                                                                                                                                                                                                                                                                                                                                                                                                                                                     |
|---------------------|---------------------------------------------------------------------------------------------------------------------------------------------------------------------------------------------------------------------------------------------------------------------------------------------------------------------------------------------------------------------------------------------------------------------------------------------------------------------------------------------------------------------|
| <b>당첨자<br/>선정방법</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기준표”의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함)</li> <li>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li> </ul> </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li> </ul>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배 점 표             |         |                |    |                                                                                                                                                                                                                                                                                    |
|-------------------|---------|----------------|----|------------------------------------------------------------------------------------------------------------------------------------------------------------------------------------------------------------------------------------------------------------------------------------|
| 평점요소              | 총<br>배점 | 배점기준           |    | 비 고                                                                                                                                                                                                                                                                                |
|                   |         | 기 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br>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br>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배정세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이내 공급 / 분양가격 9억이하</li> </ul>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자녀수 산정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li> <li>※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li> <li>※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li> <li>※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li> <li>※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li> </ul> </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li> </ul>                                                                                                                                                                                                                                                                                                                                                                                                                                                                                                                                                                                                                                                                                                                                                                                                                                                                                                                                                                                                                                                                                                                                                                                                 |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선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br>우선공급<br>(기준소득,75%) | 배우자소득이<br>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배우자 소득이<br>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신혼부부<br>일반공급<br>(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br>없는 경우 | 100%초과<br>~120%이하 | 5,554,984원<br>~ 6,665,980원  | 6,226,343원<br>~ 7,471,610원 | 6,938,355원<br>~ 8,326,025원 | 7,594,084원<br>~ 9,112,900원 | 8,249,813원<br>~ 9,899,774원  | 8,905,542원<br>~ 10,686,649원  |
|                            | 배우자 소득이<br>있는 경우 | 120%초과<br>~130%이하 | 6,665,981원<br>~ 7,221,478원  | 7,471,611원<br>~ 8,094,245원 | 8,326,026원<br>~ 9,019,860원 | 9,112,901원<br>~ 9,872,308원 | 9,899,775원<br>~ 10,724,756원 | 10,686,650원<br>~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
|-------|--------------------------------------------------------------------------------------------------------------------------------------------------------------------------------------------------------------------------------------------------------------------------------------------------------------------------------------------------------------------------------------------------------------------------------------------------------|
| 배정세대수 | 7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 전체 건설량의 3% 이내 공급 / 9억 이하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p>※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p> |

|          |                                                                                                                                                                                                                                                                                                                                                                                                                                                                                                                                                                      |
|----------|----------------------------------------------------------------------------------------------------------------------------------------------------------------------------------------------------------------------------------------------------------------------------------------------------------------------------------------------------------------------------------------------------------------------------------------------------------------------------------------------------------------------------------------------------------------------|
|          |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p>※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li> <li>-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 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li> <li>-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li> </ul>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p> |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모집공고일기준)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li>• 세대주가 아닌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청약 가능</li> <li>•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li> </ul>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전 반드시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1호, 제2호,</li> </ul>                                                                                                                                                                                                                                                            |

-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2) 청약부금 변경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3)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3)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 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  |                                                                                                                                                                                                                                                                                                                                                                                                          |
|--|----------------------------------------------------------------------------------------------------------------------------------------------------------------------------------------------------------------------------------------------------------------------------------------------------------------------------------------------------------------------------------------------------------|
|  | <p>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li> <li>•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li> </ul> |
|--|----------------------------------------------------------------------------------------------------------------------------------------------------------------------------------------------------------------------------------------------------------------------------------------------------------------------------------------------------------------------------------------------------------|

##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 1순위 | 85㎡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ol>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 서울특별시/<br>인천광역시 및<br>경기도 |
|     | 85㎡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li>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li> </ol>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                          |

|     |                    |                                                                                                                                                                                                                                                 |
|-----|--------------------|-------------------------------------------------------------------------------------------------------------------------------------------------------------------------------------------------------------------------------------------------|
|     |                    |                                                                                                                                                                                                                                                 |
|     | 1순위<br>청약제한<br>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ul> </li> </ul> |
|     | 전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li> </ul>                                                                                                                            |
| 2순위 | 2순위<br>청약제한<br>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li> </ul>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7.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
| 전용면적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구분     | 신청자격                                   |
|--------|----------------------------------------|
| ①무주택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                             |                                                                                                                                                                                                                                                                                                                                                                                                                                                                                                                                                                                                                                                                                                                                                                                                                                                                                                                                                                                                                                                   |
|-----------------------------|---------------------------------------------------------------------------------------------------------------------------------------------------------------------------------------------------------------------------------------------------------------------------------------------------------------------------------------------------------------------------------------------------------------------------------------------------------------------------------------------------------------------------------------------------------------------------------------------------------------------------------------------------------------------------------------------------------------------------------------------------------------------------------------------------------------------------------------------------------------------------------------------------------------------------------------------------------------------------------------------------------------------------------------------------|
| 적용기준                        |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위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동 규칙 제2조 제7호의 3)</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부양가족의 인정<br>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p> <p>※ 2020.0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산정시에는 제53조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음</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p> <p>-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
| ③입주자저축<br>가입기간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p>                                                                                                                                                                                                                                                                                                                                                                                                                                                                                                                                                                                                                                                                                                                                                                                                                                                                                     |
| ④주택소유 여부<br>및 무주택기간<br>산정기준 |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8호 [별표1의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br>-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 부양가족수      |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br>- 가족관계증명서<br>-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br>2)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총 점          | 84점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입주자<br>및 예비입주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ul> |

|                                               |                                                                                                                                                                                                                                                                                                                                                                                                                                                                                                                                                                                                                                                                                                                                                                                                                                                                                                                                                                                                                                                                                                                                                                                                                                                                                                                                                                                                                                                                                                                                                                                                                                                                                                                                                                                                                                                                                                                                                 |
|-----------------------------------------------|-------------------------------------------------------------------------------------------------------------------------------------------------------------------------------------------------------------------------------------------------------------------------------------------------------------------------------------------------------------------------------------------------------------------------------------------------------------------------------------------------------------------------------------------------------------------------------------------------------------------------------------------------------------------------------------------------------------------------------------------------------------------------------------------------------------------------------------------------------------------------------------------------------------------------------------------------------------------------------------------------------------------------------------------------------------------------------------------------------------------------------------------------------------------------------------------------------------------------------------------------------------------------------------------------------------------------------------------------------------------------------------------------------------------------------------------------------------------------------------------------------------------------------------------------------------------------------------------------------------------------------------------------------------------------------------------------------------------------------------------------------------------------------------------------------------------------------------------------------------------------------------------------------------------------------------------------|
| <p><b>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p><b>일반공급 입주자<br/>및<br/>예비입주자<br/>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로 우선공급 적용합니다.</li> </ul> </li> <li>*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자한 공급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수도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
| <p><b>유의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람.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6.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매매 등 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①호와 제②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상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의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일
  - 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해당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 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함)
    - 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로 봄.
    - 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계약취소 주택재공급” 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소유)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 |                                                                                                                                                                                                                                                                                                                                                                                                                                                                                                                         |
|-------------------------------------------------------------------------------------------------------------------------------------------------------------------------------------------------------------------------------------------------------------------------------------------------------------------------------------------------------------------------------------------------------------------------------------------------------------------------------------------------------------------------|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br>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서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br>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br>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br>⑥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br>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br>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

#### IV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신청 방법

- 본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구분       | 신청대상자                     |    | 거주구분                              | 청약신청 접수일                                                                | 신청방법                                                                                                                                                                                                                                                               |
|----------|---------------------------|----|-----------------------------------|-------------------------------------------------------------------------|--------------------------------------------------------------------------------------------------------------------------------------------------------------------------------------------------------------------------------------------------------------------|
| 특별<br>공급 | 기관추천/다자녀가구/<br>신혼부부/노부모부양 |    | 서울특별시 /<br>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b>2020.07.14. (화요일)</b><br>(인터넷청약 : 08:00~17:30<br>건본주택 : 10:00~14:00) | <b>•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스마트폰)</b><br>-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br>- 스마트폰앱<br>※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IBK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br>※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 일반<br>공급 | 1순위                       | 해당 |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 <b>2020.07.15. (수요일)</b><br>(인터넷청약 08:00 ~ 17:30)                       |                                                                                                                                                                                                                                                                    |
|          |                           | 기타 |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br>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b>2020.07.16. (목요일)</b><br>(인터넷청약 08:00 ~ 17:30)                       |                                                                                                                                                                                                                                                                    |
|          | 2순위                       |    | 서울특별시<br>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b>2020.07.17. (금요일)</b><br>(인터넷청약 08:00 ~ 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애플앱스토어 어플도 이용 가능)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신청방법이 ‘건본주택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불가)허용됩니다. (방문접수시간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청약접수시간 09: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타지역 청약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7.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 (해당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1순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상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청약 절차안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 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 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 ~ 17:30으로 변경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들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0.07.23. (목요일)</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
|      | 2순위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구 분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07.23(목) ~ 2020.08.01.(토) (10일간)                                                                                                                                                                                                      |
| 인 터 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p>※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gt;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p> |
| 휴 대 폰<br>문자서비스 | 대 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07.23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 구분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 비고                               |
|------------------------------|------------------------------------------------------|---------------------------------|----------------------------------|
|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br>(특별공급, 일반공급) | 2020.07.25.(토요일) ~ 08.03.(월요일) 10일간<br>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br>(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26)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3)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br>(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무주택 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br>동의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포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br>(또는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br>(청약 당첨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원의 경우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공고일 현재))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br>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br>-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 ※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일반(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합니다.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신혼부부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
|-----------------|---|---|-----------------------|------------------|----------------------------------------------------------------------------------------------------------------------------------------------|
| 특별공급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
|                 | ○ |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자녀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일반공급<br>당첨자     |   | ○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br>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확약서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견본주택 비치)                                                                                                         |
| 부적격<br>통보를 받은 자 |   | ○ | 건물등기부 등본              |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   |   |                     |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주택    |                                                                 |
|                                |   | ○ | 소형/저가주택임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   | ○ | 기타 무주택자임을증명하는서류     | 해당주택    |                                                                 |
|                                |   | ○ | 사업주체가요구하여인정하는서류     |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당첨자(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 ○ |   | 위임장                 | 당첨자(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
|                                | ○ |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br>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인터넷 청약 시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br>(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직장 /세무서<br>② 해당직장 |
|      | 금년도신규취업자<br>/ 금년도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 ①,② 해당직장              |

|                       |                                                          |                                                                                                                                                                                    |                                         |
|-----------------------|----------------------------------------------------------|------------------------------------------------------------------------------------------------------------------------------------------------------------------------------------|-----------------------------------------|
|                       |                                                          |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근로계약서<br>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br>영수증이 발급되<br>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br>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br>간이과세자 /<br>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br>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br>(개인 또는 법인)                                      |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br>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br>또는 세무서<br>②세무서 또는 등기<br>소 |
|                       | 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br>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비정규직 근로자<br>/ 일용직 근로자 |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br>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 무직자                   |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br>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r>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①건본주택에 비치<br>②세무서또는홈텍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VII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0.08.04 (화요일) ~ 08.07 (금요일) 4일간<br>10:00 ~ 16:00 | 당사 건본주택<br>(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26)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시 유의사항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휴대폰번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구비서류      | 제출유형 |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 필수   | 해당자 |      |                                                    |
| 본 인 계약시 | 신분증       | ○    |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자격검증서류    |      | ○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 인감증명서     | ○    |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br>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인감도장      | ○    |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br>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계약금입금증    | ○    |     |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제3자 대리  | 인감증명서     |      | ○   |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               |         |  |   |     |                                                 |
|---------------|---------|--|---|-----|-------------------------------------------------|
| 계약시<br>(추가제출) | 위임장     |  | ○ | -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 대리인 신분증 |  | ○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br>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KB국민은행 | 008601-04-162703 | 롯데건설(주) (길음역세권 조합) |               |
| 중도금 / 잔금 | KB국민은행 | 008601-04-162716 | 롯데건설(주) (길음역세권 조합) | 계약자별 가상계좌별도안내 |

- ※ 상기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공급대금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공급대금(중도금, 잔금)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01101홍길동'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자납제(유이자)” 사업장입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므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미알선시에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각회차별로 직접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당 사업지가 투기지역으로 세대당 1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자는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월 : 2024년 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한 중도금및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편의시설, 작은도서관 등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공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비

(단위 : 원, VAT 포함)

| 구분        |       | 59A        | 59B        | 59C        | 84         | 비고 |
|-----------|-------|------------|------------|------------|------------|----|
| 발코니 확장 금액 |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16,000,000 |    |
| 계약금(10%)  | 계 약 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1,600,000  |    |
| 잔금(90%)   | 입주지정일 | 13,500,000 | 13,500,000 | 13,500,000 | 14,400,000 |    |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선택1(부분)              |           | 선택2(전실)                      |           | 비 고  |
|-----|----------------------|-----------|------------------------------|-----------|------|
|     | 설치위치                 | 금 액       | 설치위치                         | 금 액       |      |
| 59A | 거실+안방<br>(실내기 2대)    | 4,000,000 | 거실+안방+침실1+침실2<br>(실내기 4대)    | 6,600,000 | LG전자 |
| 59B | 거실+안방<br>(실내기 2대)    | 4,000,000 | 거실+안방+침실1+침실2<br>(실내기 4대)    | 6,600,000 |      |
| 59C | 거실+안방<br>(실내기 2대)    | 4,000,000 | 거실+안방+침실1+침실2<br>(실내기 4대)    | 6,600,000 |      |
| 84  | 거실+주방+안방<br>(실내기 3대) | 5,600,000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br>(실내기 5대) | 8,200,000 |      |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은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된 고급형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가전기기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제조사 | 적용주택형             | 금 액       | 비 고          |
|---------------------|-----|-------------------|-----------|--------------|
| 하이브리드 쿡탑<br>(2I+1H) | 쿠쿠  | 59A, 59B, 59C, 84 | 500,000   | CIHR-D302FB  |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 LG  | 59A, 59B, 59C, 84 | 6,000,000 | S711SI24B    |
| 빌트인 김치냉장고           | LG  | 59A, 59B, 59C     | 1,300,000 | K221PR14BR/L |
| 빌트인 김치냉장고<br>+키큰장특화 | LG  | 84                | 1,600,000 | K221PR14BR/L |

※ 59A,59B,59C타입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시 키큰장 비포함이며, 상하부장이 연장됩니다.. 84타입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시 키큰장포함입니다.

※ 본 공사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을 변경될수 있습니다.

## ■ 마감재 / 가구선택

(단위 : 원, VAT 포함)

| 구 분 | 적용 주택형                   | 금 액       | 비 고        |
|-----|--------------------------|-----------|------------|
| 현관  | 59A, 59B                 | 1,340,000 | - 3연동 현관중문 |
|     | 59C                      | 1,320,000 | - 여닫이 현관중문 |
|     | 84                       | 1,400,000 | - 3연동 현관중문 |
| 바닥  | 59A ,59B, 59C            | 5,100,000 |            |
|     | 84                       | 6,100,000 |            |
| 침실  | 59A, 59B, 59C            | 1,900,000 |            |
|     | 84                       | 2,200,000 |            |
|     | 안방 불박이장<br>(TV장/수납장 선택형) | 84        | 4,500,000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홈페이지 상품안내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10%) | KB국민은행 | 465101-01-282346 | 롯데건설(주) |                 |
| 잔 금(90%) | KB국민은행 | 465101-01-282359 | 롯데건설(주) |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별도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홈페이지 분양안내에 게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터키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홈페이지 분양 안내상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 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선행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하기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후 개별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공용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사업주체(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및 변경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동간거리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일부 제한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 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도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네이밍 포함) 및 동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주동 Core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지상/지하철,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구 분 |              | 설 계 공 지 내 용                                                                                                                                                                                                                                                                                                                                                                                                                    |
|-----|--------------|--------------------------------------------------------------------------------------------------------------------------------------------------------------------------------------------------------------------------------------------------------------------------------------------------------------------------------------------------------------------------------------------------------------------------------|
| 공통  | 도로 및 기반시설    | <p>당 현장의 구역내에는 소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 내 소유 녹지가 아니며, 실제 시공시 인접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 남동측에 35.5m 도로가 있고 단지 북동측에 12m~15m도로, 단지 서측에 20m도로가 개설 예정임. 단지 주변 대지경계선 밖 도로 및 보도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등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p>                                                                            |
|     | 인허가          | <p>인허가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특히 BF인증 진행중인 단지로 단지레벨 및 계단설치, 이륜주차장 위치이동, 출입구 폭 및 위치, 장애인 관련 시설 등의 계획이 변동 될 수 있음.</p> <p>당현장은 09년07월 최초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건축심의 접수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p> <p>분양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 빛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음.</p> <p>아파트 공사시, 현장여건 및 구조(철골+RC등)· 성능· 상품개선 등으로 착공 및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용부에 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p> |
|     | 분양홍보 물(모형,카) | <p>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과정의 관계기관 협</p>                                                                                                                                                                                                                                  |
|     |              |                                                                                                                                                                                                                                                                                                                                                                                                                                |
|     |              |                                                                                                                                                                                                                                                                                                                                                                                                                                |

|    |             |                                                                                                                                                                                                                                                                                          |
|----|-------------|------------------------------------------------------------------------------------------------------------------------------------------------------------------------------------------------------------------------------------------------------------------------------------------|
|    | 달로그, 각종광고지) | 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 | 공통사항        | 당사업장은 주상복합으로 지상1층의 외부공간 및 일부 시설들은 다수의 외부인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및 환경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
|    |             | 당사업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길음역7번 출구 방향으로 연결통로가 신설예정이며, 외부인 및 다수 지역주민이 에스컬레이터 및 지하1층 통로를 이용할 수 있음.                                                                                                                                                                                               |
|    |             | 당사업장은 임대주택이 공존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공동으로 관리되며 입주후 입주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                                                                                                                                                                                                                           |
|    |             | 단지내 설치된 외부 계단실, 에스컬레이터는 판매시설 및 판매시설 선크(휴게공간)과 연결되는 동선으로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시공시 일부 계획 및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음.                                                                                                                                                                                   |
|    |             | 단지내 북서측의 소공원과 접한 구간에 6M 폭으로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남동측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해당 공간은 24시간 개방된 보행공간으로 단지 소유이나 전용공간이 아니며,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음.                                                                                                                                                               |
|    |             | 당사업장은 사업주체인 조합과 협의하에 입면특화 디자인반영을 위한 외관디자인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관디자인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받을예정임.                                                                                                                                                                                                      |
|    |             | 본공사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크, 계단실 및 에스컬레이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천창, 드라이에리어),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    |             | 지하층은 본공사시 현장여건 및 성능개선 등을 통해 해당층에서 복합구조가 적용예정이며 천정형태 및 마감이 상이할 수 있음. (철골+RC)                                                                                                                                                                                                              |
|    |             | 판매시설을 포함한 저층부 3개층은 지정석재 마감으로 필로티 내벽마감은 석재뿔칠 마감으로 시공예정임.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    |             | 지하1층, 지상1층 및 2층은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지하2층은 판매시설의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에서 지하2층 및 지상2층으로의 연결된 동선은 비상동선 외 별도 계획되지 않음.                                                                                                                                                                   |
|    |             | 지하 및 지상층의 층고는 상품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    |             | 1층 지하주차장 램프 인근 및 지하1층 휴게공간(선크) 서측판매시설 계단실(1F)인접하여 판매시설/지하주차장 DA가 설치되며, 사이즈 및 계획은 일부 조정될수 있음                                                                                                                                                                                              |
|    |             | 모든 층의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    |             | 비상시 소방차량이 단지내/외곽으로 진입가능하고, 상시우편물 및 택배차량이 입주자편의를 위해 진입할수 있음.(추후 관리주체에서 안전상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                                                                                                                                                                                                  |
|    |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함이 단지 북서측에 소공원 및 보행통로와 인접하여 1개소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및 기능상의 이유로 지하3층 설치로 계획이 변경 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조정면적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    |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주차출입구,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             | 원패스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    |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    |             | 단지 지상에 이륜차 주차장이 단지 북서측에 소공원 및 보행통로와 인접하여 2개소가 설치되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분양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에 미관저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             | 단지내 자전거보관대가 지하주차장 3층에 위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             | 단지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크강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특히 단지 내 수경시설                                                                                                                                                                                              |

|  |       |                                                                                                                                                                                                                                                                                                                                                                                                                                                                                                                                                                                                                                                                                                                                                                                                                                                                                                                                                                                                                                                                                                                                                                                                                                                                                                                                                                                                                                                                                                                                                                                                                                                    |
|--|-------|----------------------------------------------------------------------------------------------------------------------------------------------------------------------------------------------------------------------------------------------------------------------------------------------------------------------------------------------------------------------------------------------------------------------------------------------------------------------------------------------------------------------------------------------------------------------------------------------------------------------------------------------------------------------------------------------------------------------------------------------------------------------------------------------------------------------------------------------------------------------------------------------------------------------------------------------------------------------------------------------------------------------------------------------------------------------------------------------------------------------------------------------------------------------------------------------------------------------------------------------------------------------------------------------------------------------------------------------------------------------------------------------------------------------------------------------------------------------------------------------------------------------------------------------------------------------------------------------------------------------------------------------------|
|  |       | <p>이 추가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경우 수경시설가동에 따른 관리비 및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p> <p>단지내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단지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p> <p>입주시 건축물 형태, 조경마감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p> <p>지상1층 어린이집에 인접하여 유아놀이터가 설치되며 어린이집과 공원부 보행통로 사이에 단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녹지에 경사가 발생하거나 자연석쌓기, 옹벽 등의 구조물이 추가될 수 있음.</p> <p>지상2층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및 작은도서관)과 인접하여 판매시설의 실외기(101동 및 102동) 및 발전기(101동)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저층부 및 상부 인접세대와 2층 주민공동시설 및 3층 옥외공간 이용시 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p> <p>지상2층에는 경로당을 위한 소규모 조경 휴게공간이 설치되고 에어컨 실외기를 부분적으로 차폐하기 위한 트렐리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상부는 토출구로 인하여 차폐되지 않아 일부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p> <p>지상3층에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101동 남측, 102동 서측, 102동의 필로티하부)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는 외부로 노출된 공간으로 실내놀이시설이 아니며 해당 구간의 진동과 소음이 일부저층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p> <p>지상3층 필로티층의 옥상부에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하여 인조잔디가 설치될 예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일부 구간 미설치되거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나 배수 등 하자 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인이 출입할 수 있음.</p> <p>지상3층 외부공간에 보행로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형태, 규모,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포장구간의 일부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구간 녹지로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이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및 전기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p> <p>외부보안등, 옥탑 경관조명, 공용설비(영구 배수)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p> |
|  | 필로티   | <p>지상3층은 필로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필로티내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로 인하여 필로티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
|  | 동출입구  | <p>지상1층에 각동 출입구가 1개소씩 계획되어 있고 판매시설 출입구와는 동선이 분리되어 있음.</p> <p>지상3층에 외부 조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출입구가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공용홀 및 외부 보행로를 통해 각동의 주민공동시설 접근이 가능함.</p>                                                                                                                                                                                                                                                                                                                                                                                                                                                                                                                                                                                                                                                                                                                                                                                                                                                                                                                                                                                                                                                                                                                                                                                                                                                                                                                                                                                                                                                                                                 |
|  | 단지출입구 | <p>단지 서측에 지하주차장 차량입구 1개소, 단지 북동측에 지하주차장 차량출구 1개소가 있어 차량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계획됨.</p>                                                                                                                                                                                                                                                                                                                                                                                                                                                                                                                                                                                                                                                                                                                                                                                                                                                                                                                                                                                                                                                                                                                                                                                                                                                                                                                                                                                                                                                                                                                                                                      |
|  | 아파트주동 | <p>아파트 상부의 옥상 고가수조는 하부층(PH3→PH2)으로 계획이 조정될 예정이며, 각동의 옥탑계단실의 위치는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계단 노출형 형태의 외부 계단이 반영될 예정임.</p> <p>아파트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24인승 3대가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p> <p>사전재난영향성평가에 따라 101동 20층 및 102동 16층 일부에는 준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입주 해당 공간의 천정고 및 내부마감 등은 해당층 조정 및 일부 변경되어 시공예정이며 관리주체에서 안전상 출입이 통제될 수 있음.</p>                                                                                                                                                                                                                                                                                                                                                                                                                                                                                                                                                                                                                                                                                                                                                                                                                                                                                                                                                                                                                                                                                                                                                                                                                                                                                          |

|             |  |                                                                                                                                                                                                 |
|-------------|--|-------------------------------------------------------------------------------------------------------------------------------------------------------------------------------------------------|
|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  | 아파트 동주위 소방차 구역 부근에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이며,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각동 저층부에는 DA(제연DA포함), 지하주차장 환기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저층부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
|             |  | 단지 주동 옥상 일부 구간에 녹화를 위한 식재가 될 예정이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공간이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해당 녹화구간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됩니다.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  | 아파트 공용홀 창호의 크기는 설치 위치에 따라 크기가 상이하며,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             |  | 주동 지붕층의 계단실의 위치는 진입동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지 하 주차장     |  | 지하2층에 판매시설을 위한 지하주차장, 창고(내부 칸막이 및 분할 없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별도 공동주택을 위한 세대창고는 설치되지 않음.                                                                                                      |
|             |  | 판매시설 이용자들과의 동선 분리를 위해 지하2층 램프에 출입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시 일부 위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             |  | 지하5층 및 지하4층에는 주거 및 비주거용 정화조, 펌프실, 기계실, 저수소, 전기실, 빗물저수조, 발전기실의 계획으로 해당 공간에 주차공간이 설치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 할수 있고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             |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2.3M, 확장주차 폭2.5M, 여행주차 폭2.3M 또는 2.5M, 경형주차 폭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             |  | 지하주차장에는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주차장 환기용 급배기 환이 설치되며, 에어컨 및 환 가동에 따른 바람, 소음, 진동, 열기 등이 전달 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 공기순환용 유인환이 차량 주차구역 및 통행구역 상부에 설치되며, 환 가동에 따른 바람, 소음, 진동등이 전달 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최하층 주차장내 펌프실 등에는 일반 및 영구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 또한, 일부 노출 시공 될 수 있어 인근 주차구역에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 부 복 시 대 리 설 |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 경비실은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출입 등의 단지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로 관제 예정임.                                                                                                                                        |
|             |  | 어린이집 및 경로당에 인접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시설물이며 당초 지상1층~지상2층 이용층을 지상3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상3층의 일부 조정계획 등이 변경될 예정임.                                                                          |
|             |  | 주민공동시설이 101동과 102동 하부에 위치하고,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에 의해 상부저층부 세대의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있음.                                                                                    |
|             |  | 관리사무소가 101동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                                                                                                   |



|          |              |                                                                                                                                                                                                                                                                                                                                                                                                                                                    |
|----------|--------------|----------------------------------------------------------------------------------------------------------------------------------------------------------------------------------------------------------------------------------------------------------------------------------------------------------------------------------------------------------------------------------------------------------------------------------------------------|
| 단위<br>세대 | 경로당          | 경될 수 있음.<br>작은도서관이 101동 지상 2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경로당은 102동 지상 2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어린이집은 102동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가 102동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          |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          |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          |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          | 우편물수취함/무인택배함 | 우편물수취함은 각동 1층 공용홀에 설치 및 무인택배함은 지하3층 공용홀 외부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계획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 단위<br>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하여 기본형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물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쪽의 안목치수가 3,6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로 두께는 상이 할 수 있음. |
|          |              | 전타입 대청형으로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          |              | 현관,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 59C타입을 제외한 전타입의 실외기실과 옆세대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화재시 옆세대 피난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추후 입주후에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
|          |              | 59C타입은 안방 앞 비확장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4층~최상층) 홀수층 짝수층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고 위층 세대의 피난사다리가 아래층 천정에 노출되는 구조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              | 59C타입은 주방발코니 부분에 천장 마감재가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 건립타입의 천정고 등 및 마감이 상이 할 수 있음.                                                                                                                                                                                                                                                                                                                                                                               |
|          |              |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실사이즈 및 설치 규격은 실시공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 단위<br>세대 | 공통사항         |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마감,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제공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람.                                                                                                                                                                                                                                                                                                                                                        |
|          |              | 골조와 이질벽체 (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      |                                                                                                                                                                                                                                                                                                                                                                                                                                                                                                                                                                                                                                                                                                                                                                                                                                                                                                                                                                                                                                                                                                                                                                                                                                                                                                                                                                                                                                                                                                                                                                                                                                                    |
|------|----------------------------------------------------------------------------------------------------------------------------------------------------------------------------------------------------------------------------------------------------------------------------------------------------------------------------------------------------------------------------------------------------------------------------------------------------------------------------------------------------------------------------------------------------------------------------------------------------------------------------------------------------------------------------------------------------------------------------------------------------------------------------------------------------------------------------------------------------------------------------------------------------------------------------------------------------------------------------------------------------------------------------------------------------------------------------------------------------------------------------------------------------------------------------------------------------------------------------------------------------------------------------------------------------------------------------------------------------------------------------------------------------------------------------------------------------------------------------------------------------------------------------------------------------------------------------------------------------------------------------------------------------|
|      | <p>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몰딩 및 마감,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p> <p>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p> <p>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등 석재류의 이음부는 자재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p> <p>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p> <p>실 시공 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p> <p>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선행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샘플하우스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예정임.</p> <p>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시공치수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p> <p>단위세대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p> <p>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달리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후 계약체결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자재에 따라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라 보일 수 있음.</p> <p>유상옵션 원목마루 등 천연자재의 경우 본공사시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p> <p>마감자재내용은 형별,타입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기바라며 마감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의기준은 KS기준에 한함.</p> <p>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고, 욕실단차는 신발걸림과 무관함.</p> <p>현관,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실시공시 현장 여건 및 하자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p> <p>59A, 84타입의 경우 침실2의 방향으로 인하여 마루깔기 방향이 달라지는 구간이 발생되므로, 복도와 침실사이에 마루 방향 변경을 위한 금속재료분리대가 설치됨.</p> |
| 제공품목 | <p>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p> <p>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59B타입의 경우 김치 냉장고 설치 공간이 협소하며,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빌트인 팬트리 액세서리의 형태가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상이하므로 계약전 분양홍보물 및 인쇄물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p> <p>원패스키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원패스키 디자인은 입주 시 확정됨.</p>                                                                                                                                                                                                                                                                                                                                                                                                                                                                                                                                                                                                                                                                                                                                                                                                                                                                                                                                                                                                                                                                                                                                                                |

|                  |                                                                                                                                                                                      |
|------------------|--------------------------------------------------------------------------------------------------------------------------------------------------------------------------------------|
| 건본주택<br>및<br>홍보물 | 건본주택은 59B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EX.주방가구배치 및 색상/타일, 도배지무늬패턴/가구의 디자인 및 제공유무 등은 동일평형이라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주체는 건본주택을 미운영 혹은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 예정임.                                                                                                       |
|                  |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 및 세대 현관문틀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공사시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                  | 건본주택 내 연출된 전시품은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이동식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액자 및 소품 등이 포함됨.                                                                   |
|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                  |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건본주택 내 부착되어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 건본주택 건립평형 외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 사양은 건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건본주택의 대피동선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대 일부를 제거하였으며, 이는 실시공시와 무관함.                                                                                                                                    |
|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                  | 건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환기디퓨저는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건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및 수전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 마감재              | 건본주택에 바닥배수구는 설치되지 않고, 본공사시 설치되며, 위치는 건본주택의 표기 위치와 상이할 수 있음.                                                                                                                          |
|                  | 건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                  |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천장형 냉난방기는 건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 시 포함되지 않음.                                                                                                                                       |
|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 공될 수 있음.                                                                                  |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 마감재              | 공장생산 자재(인조대리석류, 타일, 벽지, 시트, 마루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                                                                                                                                        |
|------|----------------------------------------------------------------------------------------------------------------------------------------|
|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상이해 보일 수 있음.                                                              |
|      | 세대 내부 마감자재는 디자인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 현장은 전타입 동일마감이 적용됨.                                                                                 |
|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음.                                                  |
| 가구공사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
|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      | 주방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며 온수분배기 하부 및 배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
|      | 욕실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      | 욕실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창호공사 | 세대내 침실 문짝, 욕실 ABS문짝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및 외부 입면계획, 인테리어 마감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확장시 제공되는 이중창호의 프레임은 외부창호 외측면에 지정도장이 적용될 예정임. |
|      | 세대창호는 조망형 유리난간대가 설치예정이며(철제난간대 미설치), 적용된 실은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함.                                                                 |
|      | 외부창호는 한쪽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다른한쪽은 안전상 고정되어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함. (84타입 거실창호는 중간창호만 고정) 적용된 실은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사다리차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함.           |
|      | 전타입의 주방창호는 미러형 상관없이 오른쪽 창호가 안쪽으로 설치되어, 오른쪽에서 열기 편하도록 통일 적용됨.                                                                           |
|      |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도어스토퍼 제품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      | 창호의 설치 위치, 열림방향 및 크기는 외관 디자인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타입별로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 또는 보일러 연도가 설치 될 수 있음.                                                           |
|      | 세대 내 현관방화문, 대피공간의 방화문, 실외기실의 철재도어의 디자인, 강판의 재질, 부속품의 형태 및 기능, 경첩의 개소 등은 추후 실 시공시 동등이상으로 변경/교체될 수 있음.                                   |

|       |                                                                                                                                                                                                                                                                                                                                                                                                                                                                                                                                                                                                                                                                                                                                                                                                                                                                                                                                                                                                                                                                                                                                                                                                                                                                                                                                                                                                                                                                                                                                                                                                                                                                                                  |
|-------|--------------------------------------------------------------------------------------------------------------------------------------------------------------------------------------------------------------------------------------------------------------------------------------------------------------------------------------------------------------------------------------------------------------------------------------------------------------------------------------------------------------------------------------------------------------------------------------------------------------------------------------------------------------------------------------------------------------------------------------------------------------------------------------------------------------------------------------------------------------------------------------------------------------------------------------------------------------------------------------------------------------------------------------------------------------------------------------------------------------------------------------------------------------------------------------------------------------------------------------------------------------------------------------------------------------------------------------------------------------------------------------------------------------------------------------------------------------------------------------------------------------------------------------------------------------------------------------------------------------------------------------------------------------------------------------------------|
|       | <p>세대내 목창호, 여단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p> <p>침실1, 침실2의 유리난간대 높이는 안방, 거실에 설치되는 난간대 높이보다 다소 높게 설치될 예정임.</p>                                                                                                                                                                                                                                                                                                                                                                                                                                                                                                                                                                                                                                                                                                                                                                                                                                                                                                                                                                                                                                                                                                                                                                                                                                                                                                                                                                                                                                                                                                                                                           |
| 전기/설비 | <p>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 보일러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p>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p> <p>실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거실, 안방)으로 설치됨. (시스템에어컨(냉방 전용) 설치 세대 제외)</p> <p>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지원됩니다.</p> <p>스마트홈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p> <p>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p> <p>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상이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p> <p>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 및 불박이장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p> <p>단위세대 실외기실 내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노출 설치되며, 그릴창 외부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p> <p>다용도실 내부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급탕 및 난방 사용시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p> <p>세대주방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p> <p>세대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실시공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p>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p> <p>주방 싱크대 하부장은 난방 온수분배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p> <p>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p> <p>일부 발코니에 우수입상배관 및 발코니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p> <p>아파트 옥상에는 판매시설/공동주택 용도의 주방 및 일반 배기팬, 소방용 제연팬, 정화조 배기탑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하여 인접 고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
| 발코니 및 |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p>                                                                                                                                                                                                                                                                                                                                                                                                                                                                                                                                                                                                                                                                                                                                                                                                                                                                                                                                                                                                                                                                                                                                                                                                                                                                                                                                                                                                                                                                                                                                                                                                                                                           |

|      |                                                                                                                                                                                          |
|------|------------------------------------------------------------------------------------------------------------------------------------------------------------------------------------------|
| 실외기실 | 발코니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다소 변경 될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빨래건조대본전체를 사용하지 못할수 있음.                                                                                                       |
|      | 주방 발코니 내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높이 및 레이아웃, 바닥타일나누기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 주방 발코니 내 다용도월판넬의 설치 위치 및 사이즈는 실시공사 선풍통, 스위치등과 간섭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세탁기(건조기)와 보일러가 설치되는 일부 세대에는 보일러 유지 보수를 위해 세탁기 이동 후 유지 보수가 가능함.                                                                                                                           |
|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 유상옵션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바람.                                                                           |
|      | 건본주택은 가전기기를 포함한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      |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      | 별도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부위는 카달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      | 건본주택에 시공된 원목마루 유상옵션미선택시 유사한 컬러의 강마루가 시공되며, 원목마루와 강마루는 사이즈및 두께가 상이하므로 확인후 계약하시기바람.                                                                                                        |
|      | 현관중문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옵션 선택 시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신발장부위 1면이 고정설치 됨. 또한 설치 유무에 따라 인접한 가구 및 신발장의 형태 및 사이즈가 상이 할수 있으며, 실시공사 사용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레일 및 도어의 디테일과 형태 ,컬러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      | 안방 불박이장 선택형 유상옵션은 84타입만 선택가능하며 TV장과 수납장 중 선택가능함. TV장 선택시 TV설치 위치는 최대 55인치 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므로 소유하신 가전의 사양 및 사이즈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      | 침실2 불박이장 유상옵션은 각 타입별 사이즈 및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타입별 제공되는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
|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하이브리드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음                                                                                                                                                       |
|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되며, 상부장 이외의 도어 및 빌트인 팬트리는 미제공됨.(단, 59타입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시에도 빌트인팬트리는 제공되지 않음)                                                      |
|      | 59A, 59B, 59C 타입의 경우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시에도 빌트인 팬트리는 제공되지 않으며,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상부장/하부장/상판의 길이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

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84타입은 빌트인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시 측면에 주방가구 키큰장특화(빌트인팬트리)가 포함됨.

X 기타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92020-101-0004500 호 | 구백오십삼억칠천팔십만원정<br>(₩95,370,8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 금액          | 비 고 |
|----------|---------------|----------------|-----|
| 건축감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2,166,069,596원 |     |
| 전기       | (주)력키기술단      | 495,003,864원   |     |
| 통신/소방 감리 | (주)건창기술단      | 594,000,000원   |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          |   |                |   |                             |   |                    |  |                                            |  |         |  |         |
|-------------------------------------------------------------------------------------------------------------------------------------------------------------------------------------------------------------------------------------------------------------------------------------------------------------------------------------------------------------------------------------------------------------------------------------------------------------------------------------------------------------|-----------------------------------------------------------------------------------------------------------------------------------------------------------------------------------------------------------------------------------------------------------------------------------------------------------------------------------------------------------------------------------------------------------------------------------------------------------------------------------------------------------------------------------------------------------------------------------------------------------------------------------------------------------------------------------------------------------------------------------------------------------------------------------------------------------|-----|----------|---|----------------|---|-----------------------------|---|--------------------|--|--------------------------------------------|--|---------|--|---------|
| <div> <div>  <p>제 1 - 078</p> <p><b>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b></p> <p>대상건축물 : 김음역세권 롯데캐슬<br/>소 제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일대<br/>부 분 : 주거복합건축물<br/>인 중 기 간 : 2010년 7월 30일 ~ 사용필사일</p> <p>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0년 7월 30일</p> <p><b>한국토지주택공사</b><br/>토 지 주 택 연 구 원 장</p> <p><small>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mall></p> </div> </div> | <div> <div> <p><b>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노시 제2009-1398호-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2009-2009.12)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지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br/>* 이 인증서를 적용 받고 있 건물 건축물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당일이 될때까지 인증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r> <th>등 급</th><th>예비인증 1등급</th></tr> <tr> <td>분</td><td>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비량</td></tr> <tr> <td>별</td><td>280.41 MJ/m<sup>2</sup>·년</td></tr> <tr> <td>과</td><td>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td></tr> <tr> <td></td><td>16.29 kgCO<sub>2</sub> /m<sup>2</sup>·년</td></tr> <tr> <td></td><td>총에너지절감율</td></tr> <tr> <td></td><td>41.47 %</td></tr> </table> <p>인 중 번 호 12-광-에-1-0037</p> <p>건 축 물 명 김음역세권 롯데캐슬</p> <p>소재지주소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p> <p>2012년 08월 06일</p> <p>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p> </div> </div> | 등 급 | 예비인증 1등급 | 분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비량 | 별 | 280.41 MJ/m <sup>2</sup> ·년 | 과 |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  | 16.29 kgCO <sub>2</sub> /m <sup>2</sup> ·년 |  | 총에너지절감율 |  | 41.47 % |
| 등 급                                                                                                                                                                                                                                                                                                                                                                                                                                                                                                         | 예비인증 1등급                                                                                                                                                                                                                                                                                                                                                                                                                                                                                                                                                                                                                                                                                                                                                                                                  |     |          |   |                |   |                             |   |                    |  |                                            |  |         |  |         |
| 분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비량                                                                                                                                                                                                                                                                                                                                                                                                                                                                                                                                                                                                                                                                                                                                                                                            |     |          |   |                |   |                             |   |                    |  |                                            |  |         |  |         |
| 별                                                                                                                                                                                                                                                                                                                                                                                                                                                                                                           | 280.41 MJ/m <sup>2</sup> ·년                                                                                                                                                                                                                                                                                                                                                                                                                                                                                                                                                                                                                                                                                                                                                                               |     |          |   |                |   |                             |   |                    |  |                                            |  |         |  |         |
| 과                                                                                                                                                                                                                                                                                                                                                                                                                                                                                                           |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     |          |   |                |   |                             |   |                    |  |                                            |  |         |  |         |
|                                                                                                                                                                                                                                                                                                                                                                                                                                                                                                             | 16.29 kgCO <sub>2</sub> /m <sup>2</sup> ·년                                                                                                                                                                                                                                                                                                                                                                                                                                                                                                                                                                                                                                                                                                                                                                |     |          |   |                |   |                             |   |                    |  |                                            |  |         |  |         |
|                                                                                                                                                                                                                                                                                                                                                                                                                                                                                                             | 총에너지절감율                                                                                                                                                                                                                                                                                                                                                                                                                                                                                                                                                                                                                                                                                                                                                                                                   |     |          |   |                |   |                             |   |                    |  |                                            |  |         |  |         |
|                                                                                                                                                                                                                                                                                                                                                                                                                                                                                                             | 41.47 %                                                                                                                                                                                                                                                                                                                                                                                                                                                                                                                                                                                                                                                                                                                                                                                                   |     |          |   |                |   |                             |   |                    |  |                                            |  |         |  |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사업주체명                                                   | 시공회사명                                     |
|---------------------------------------------------------|-------------------------------------------|
| <p>김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법인등록번호 : 114471-0003183)</p> | <p>롯데건설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110111-0014764)</p> |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26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건본주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건본주택 관람이 불가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 <http://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811-6700

※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